

의안번호	2219305
의 퇴 인	김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07.02.
추계번호	26E28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병원선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병원선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2029년 말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7년 10.6억원, 2030년 1.6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38.8억원(연평균 9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, 부가가치세(지방소비세)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(안 제106조의2 제1항제3호 신설)	-10.6	-12.8	-13.7	-1.6	-38.8	-9.7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6.3	-7.3	-7.8	-0.7	-22.1	-5.5
교육세	-0.9	-1.1	-1.2	-0.1	-3.3	-0.8
자동차세	-1.6	-1.9	-2.0	-0.2	-5.7	-1.4
부가가치세(국세)	-1.3	-1.9	-2.0	-0.5	-5.7	-1.4
지방소비세	-0.5	-0.6	-0.7	-0.2	-1.9	-0.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, 연안여객선박용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제1항제3호 신설	○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,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를 면제 - (적용기한) 2029년 12월 31일까지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제1항제3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병원선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여 추계
 - 병원선 석유류 공급량은 최근 연평균 증감률 추세를 반영
 -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석유류 세전가격은 최근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¹⁾ 최근 연평균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병원선의 석유류에는 윤활유도 포함되어 있으나,²⁾ 현재 윤활유 가격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동 추계에는 포함하지 않음³⁾
-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,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
 - 매년 징수 기간(부가가치세: 분기, 그 외 세목: 월)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기간 병원선 석유류 공급량은 2027년 휘발유 7.7천리터, 경유 1,813.6천리터 수준일 것으로 추정

1) 두바이유 가격(달러/배럴): ('18년) 69.66 ('19년) 63.53 ('20년) 42.29 ('21년) 69.41 ('22년) 96.41 ('23년) 82.10 ('24년) 79.58 ('25년) 69.36 ('26년 5월) 103.15

2)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

3) 병원선 윤활유 공급량은 2020년 9,295리터, 2023년 11,937리터, 2025년 7,871리터 등으로 집계됨

- 2020~2025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된 석유류 공급량은 휘발유 연평균 9.5%, 경유 연평균 7.3% 증가하는 추세

[표 2]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에 사용된 석유류 공급량 현황

(단위: 리터, %)

유종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감률
휘발유	4,079	4,350	5,047	4,938	5,627	6,413	9.5
경유	1,109,509	1,025,243	993,377	1,188,097	1,456,214	1,576,035	7.3

자료: 보건복지부 제공자료(지자체 제출자료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기간 동안 최근의 연평균 증감률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3]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에 사용된 석유류 공급량 추정

(단위: 리터)

유종	2026	2027	2028	2029
휘발유	7,020	7,685	8,413	9,210
경유	1,690,647	1,813,593	1,945,480	2,086,959

- 추계기간 병원선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(2020~2025년) 연평균 가격인 휘발유 739원/리터, 경유(선박용) 779원/리터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4] 보통휘발유 및 선박용경유 세전가격 현황

(단위: 원/리터)

유종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
보통휘발유	397	638	980	837	816	763	739
선박용경유	416	581	1,090	914	857	813	779

주: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세전가격이 집계되지 않는 상황임

자료: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병원선 석유류의 연평균 사용량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율, 연평균 세전가격 등을 바탕으로, 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등의 간접세액은 2027년 12.0억원(귀속 기준) 등의 수준일 것으로 추정
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= 휘발유 및 경유 연평균 사용량

$$\times \text{세율(휘발유 529원/리터, 경유 375원/리터)}^4$$

4) 추계기간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

- 교육세액 =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× 15%
- 자동차세액(주행분) =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× 26%
- 부가가치세액 = (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+ 교육세액 + 자동차세액 + 세전가격) × 10%
 -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액의 74.7%, 지방소비세는 25.3%로 계산

[표 5] 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액 추정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6.8	7.3	7.9
교육세	1.0	1.1	1.2
자동차세	1.8	1.9	2.0
부가가치세(국세)	1.8	1.9	2.0
지방소비세	0.6	0.6	0.7
합계	12.0	12.9	13.8

주: 부가가치세(국세)는 전체 부가가치세액의 74.7%, 지방소비세는 25.3%로 계산함

□ 병원선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2029년 말까지 3년간 간접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는 2027년 10.6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38.8억원(연평균 9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
 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/12, 차년도에 1/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/4, 차년도에 1/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시 세수효과: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6.3	-7.3	-7.8	-0.7	-22.1	-5.5
교육세	-0.9	-1.1	-1.2	-0.1	-3.3	-0.8
자동차세	-1.6	-1.9	-2.0	-0.2	-5.7	-1.4
부가가치세(국세)	-1.3	-1.9	-2.0	-0.5	-5.7	-1.4
지방소비세	-0.5	-0.6	-0.7	-0.2	-1.9	-0.5
합계	-10.6	-12.8	-13.7	-1.6	-38.8	-9.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